



신용우
본회이사

관련제도 입안에 대승적자세를 가지고 노력하자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는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개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낙농업 100년 대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온 심혈을 기울여
자혜를 모아야 하겠다.

우리 낙농가들의 여망인 낙농진
흥법이 이제 개정되었다.

이 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여
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낙농인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유제품의 수입개방 이전
에 법이 개정되었다면, "지난해 처
럼 낙농가와 유업체의 어려움은 충
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늦었다
고 생각될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는 격언처럼 이번에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는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
한 법개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낙농
업 100년 대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온 심혈을 기울여 자혜를
모아야 하겠다.

세계화 시대에 낙농가와 관련단
체가 대외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되어 낙진법 개정으
로 인하여 낙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낙농진흥회에 구성원이
된 단체와 개인은 우리나라 낙농업
전체의 생존권과 존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복제도 마련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관련제도 입안에 대승
적 자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
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첫째, 진흥회의 구성원은 낙농업
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2세, 3세가 낙농
업을 계속 영위하여 국민경제의 균
형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낙
농업협동조합 및 집유조합이 주축
이 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낙농가
가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원유가 결정에는 현실적인 생
산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낙농진흥회가 사업초기에
는 재정적인 자립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
정지원을 받도록하여 낙농가와 유
업체와의 제반 문제해결에 주도적
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영세 낙농가에게는 목장을 계속
영위하여 전업 낙농가로 규모화할
수 있도록 원유생산량의 계약한도
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원유검사기관, 진흥회, 축협중앙
회 및 집유조합이 연계한 종합낙
농기술지도센터의 운영으로 낙농
가의 전업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낙농업의 발전과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유제품
이 업계간 또는 행정부서간의 힘겨
루기 대상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유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하고 유제품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그간 낙농가와 유업체간 불신의
벽이 원유검사에 있었던 만큼 원유
검사는 모 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
가 지정기관에서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하여 검사불신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원유검사
성적은 유대지급 단가뿐만 아니라
검사 정보의 피드백 체계로 관리되
어 낙농가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
유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집유조합에서는 집유대
상 낙농가중 조합원과 비조합원
과의 제반 지도사업 수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지도사업지원
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전체
낙농가가 낙농진흥회와 계약이
됨은 물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
입되어 진흥회 설립의 취지화 협
동조합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낙농진흥회의 가입이 강제사항

특집

이 아니므로 집유일원화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최대한 관련업계가 동회에 동참토록 하되 동참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낙농업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

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진흥회 참여를 반대하는 일부지역의 낙농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를 모아주기 바란다.

끝으로 낙농진흥회는 구성원 낙

농가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에 진력하고 낙농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낙농부국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



이상섭
강원도지회장

낙진법개정은 낙농업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낙농진흥회는 법이 정하는 제반업무에 안정을 기하고 업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가상모형실험)화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완벽한 사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퇴보를 가져 올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WTO)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세계시장 경제의 원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며 한편,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그에 상응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변화에 민첩 대응하지 못한 여러 기업군이 결국은 부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우리 낙농 산업에게도 새로운 사실이 아님을 국내굴지의 유가공업체의 일례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입 개방의 물결을 타고 밀려드는 외국산 우유 및 유가공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낙농산업은 점점 사양산업인양 치부되어 왔으며, 낙농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국내 낙농산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하였다. 그나마 낙농산업

의 중흥을 위하여 이미 15년전부터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외쳐왔건만 일부 낙농관련 단체와 낙농가의 반대로 계속 국회에 계류된 채 14대 국회에서도 폐기되고 말았으나 지난 7월 30일 제 184회 임시 국회에서 낙농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낙농산업의 가장 큰 숙원 과제가 해결되었다.

그동안 이법의 개정을 위하여 앞장서 추진한 협회집행부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정부의 관계자, 농림해양수산위원, 낙농관련조합장을 그리고, 낙농가 여러분께 이지면을 통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낙농진흥회가 하여야 할 일들을 두루 없이 적고자 한다.

낙농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시행

일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이법의 개정을 추진한 주체들은 이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2001년부터 완전히 개방되는 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립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법의 개정에 적극 반대한 단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포용력을 보여주어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일체감과 동지애를 느껴야하는 데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내부 하나의 적이 외부 열의 적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이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느꼈으리라 믿으며 더 이상 우리 내부의 적이 양산되